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묻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화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산
리

5,000
3,900
3,000
3,000
5,000
3,000

ER

민법·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법정 재판대신 이혼을 완결시키는 대안은 없는지

〈문〉 저는 현재 이혼을 막 신청한 단계입니다. 아내와는 재산 분배 문제와 양육비 문제로 의견 차이가 많아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내와 저는 비즈니스 관계로 소송에 걸려 지난 2년간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하느라 온갖 시간과 비용을 다 들었고 결국 재판에 이기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이득도 없이 끝나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또 이혼 때문에 법정에 오가며 씨울 생각을 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쳐버립니다. 그렇다고 쉽게 합의될 단계도 아니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하며 싸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 귀하의 경우에는 법정을 통한 이혼 소송보다는 중재(Mediation)를 통한 이혼의 원결이 비범직하다고 사려됩니다. 중재란 종립의 위치를 지키는 중재자가(Mediator) 양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쌍방간에 대화를 도모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개개인이 중요시하는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고 보호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자

진해서 동의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재자들은 변호사, 심리학 카운슬러, 회계사 등 이혼의 기본 문제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를 진행시키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중재의 경우, 중재자는 설사 중재자 자신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없는 위치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아가며, 중재를 진행시킬 수도 있고, 혹은 당사자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법적 문제에 한해 쌍방이 서로 동의하는 변호사를 법적 의뢰인으로 중재에 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쌍방간에 합의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합의서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며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내린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재 단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문 자녀양육비와 배우자 생활보조비 지급에 따른 세금보고

〈문〉 저는 현재 자녀 양육비로 월 400달러, 배우자 생활보조비로 월 2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세금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내는 쪽에서는 세금 절감의 혜택을 주장하

실 수 없고 받는 쪽에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으로 긴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우자 생활보조비는 내는 쪽에서는 세금 절감의 혜택을 주장할 수 있는 지출로 보고하고 받는 쪽에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문 이혼 판결문을 받은 후 불공평한 재산 분배 사실을 알았는데

〈문〉 저는 남편과 합의를 보고 8개월 전에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었고 미성년 자녀도 없던 터라 주된 문제는 남편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재산 분배였습니다. 결혼 기간 내내, 저는 가정 주부로 애를 키우는데 만 전념했고, 남편은 여러 개의 회사를 거느린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회사 재정에 대해 통 어두웠으나, 솔직히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몰라온 상황 속에서 제 변호사가 일을 진행하는 대로 따르고 이혼 합의서도 서명했습니다. 열마전 집으로 남편의 우편물이 우연히 왔는데, 남편이 결혼 기간 중에 저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만 투자해온 증권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증권이라고는 이혼 소송 기간 내내 한번도 거론된 적도 없었고, 이혼 합의서에 재산 분배의 하나로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귀하께서는 8개월 전에 들어간 이혼 판결문을 취소시키고(Motion to Set Aside Judgment) 증권을 고려한 새로운 이혼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서 자신

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서 판결문이 들어가거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문이 들어간 경우, 가주 민사소송절차법 473조에 입각하여, 판결문이 들어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문을 취소시키는 소송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판결문이 들어간 지 6개월 이상 경과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은 불가능하나, 가주 가정법 2120조에 의거하여 8개월 전에 들어간 판결문을 취소시키고 숨겨졌던 증권까지 다시 재산 목록에 첨부하여 새로운 재산 분배의 판결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주 가정법 2021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산 분배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당사자간에 재산 분배를 위한 재산 공개에 있어, 재산 은닉, 사기, 혐박, 혹은 범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서의 실수등에 의해 풍평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판결문 취소 소송 제기 시기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법 473조의 6개월 이상으로 연장시키는 특수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취소시키려는 법적 근거에 따라, 판결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